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등급”을 각각 “S등급 또는 1등급”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의한 통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특수건물 안전점검표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		대표준공년도

점검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자
-----	---------------	-----

입회자	소유자	사업장 전화번호
-----	-----	----------

보험사항	보험종류	증권번호	보험기간
	회사	가입금액	보험료

세부 안전점검 사항

분류	점검 평가		점검 내역	소방 서통 보	시군 구청 통보
	설비 사항	S~D			
1. 화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2. 위험물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3.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4.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5.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조직 및 훈 련	S~D			
	화기,보안 등	S~D			
6.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7.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8. 부속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9.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1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11. 수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12. 가스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13.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14. 소화활동, 소화용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15.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
16.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비고) 점검 평가에서 S는 우수, A는 양호, B는 보통, C는 미흡, D는 불량을 의미한다.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시장·군수·구청장)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m ²)		대표준공년도	

점검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자	
입회자	소유자	사업장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관련법령
1.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4.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1) 위 사항 중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 미흡 등으로 한정함.

비고2) 관련 법령이 기재된 점검 결과는 법 제17조에 따른 개선요청 사항임.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소방관서의 장)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		대표준공년도	

점검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자	
입회자	소유자	사업장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관련 법령
1. 화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5.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6.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7. 부속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사항		
9. 수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10. 가스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11.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12. 소화활동, 소화용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13.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1) 위 사항 중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훼손, 변경, 관리 미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

비고2) 관련 법령이 기재된 점검 결과는 법 제17조에 따른 개선요청 사항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p> <p>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u>가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p>	<p>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 ----- ----- ----- ----- -----.</p> <p>1. ----- ----- -- <u>감정평가법인등</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 ----- ----- ----- ----- ----- -----</p>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
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7